

의안번호	제416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3년 10월 4일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416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별 출연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6월)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육성사업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 공공연구성과 확산,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지원 및 투자 연계로 기업성장 및 지역 경쟁력 강화	4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 (출연 및 보조금)
2	(재)충북과학 기술혁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기획·육성 기능 수행○ 남·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신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산업 지능화·고도화 전략 마련	1,004,4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유희남	김영옥	강혜리	8415

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 강병삼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 규모 : 11본부(11실, 16팀), 1부(1팀), 정원 총 170명 ○ 주된사업 :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출자·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45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충북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	'24.3.10. ~'25.3.9.	450	450	2,900	2,000	450	450	
※ 국비, 시군비는 재단으로 직접지원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8월)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 추진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으로 반드시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2281호('21.8.26.) / 총 사업비 대비 지방비 30%, 국고 대비 40%이상 매칭 ○ 기존 광역특구에서도 매년 육성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의견 (중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8월)에 따라, 창업·기업성장 지원 및 특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 특구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이전→사업화→기업성장'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충북의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 건의드릴 것임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 관계법령 발체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우리 도는 지역 R&D 강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충북연구개발특구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음
- 2019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충북을 포함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고시되었고(현재 총 14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지자체 협약을 통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9) 청주, 안산, 김해, 전주, 창원, 포항 등 6개 / (20) 서울, 구미,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안산 등 6개 / (22) 인천, 춘천 등 2개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총 2.85km² 기술사업화 배후공간으로 구성하여('23년, 2.2km² → 2.85km² 면적확장), 스마트IT부품·시스템 분야를 특화하여 육성 중임
-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 주도형으로 새롭게 도입된 소규모 고밀도 R&D특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강소특구 육성사업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 총 사업비 대비 30%, 국고 대비 40%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2281호('21.8.26.)
- 기존 5개의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출연(30~45억원)해왔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도 '20.~'23. 특구육성사업을 위해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출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출연금 검토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결산액	2023 예산액(최종) (C)	2024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요구액 (A)	실과검토액 (B)	증감 (B-A)	
충북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	450	450	450	450	0	0

※ 관련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2281호(2021.8.26.)

- 총 사업비 대비 30%, 국고 대비 40% 이상

1-2 출연기관 현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설립근거	법률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전화번호 : 042-865-8800			
				www.innopolis.or.kr			
주요연혁	◦'05. 9.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12. 7. : 특구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범(명칭변경) ◦'19. 8. : 강소특구(안산,진주,창원,포항,창주,김해) 지정 ◦'20. 8. : 강소특구(구미,울산,군산,나주,홍릉,천안) 지정 ◦'22. 6. : 강소특구(인천서구, 강원춘천) 지정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정부출연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원현황 ('23.06.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58명		147명		11명		
임원 ('23.08.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강OO	(前)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2021.03.05.~2024.03.04. (3년)		
	비상임이사	임O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당연직		
	비상임이사	황OO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당연직		
	비상임이사	손OO	경북대학교 교수		2022.12.29.~2024.12.28		
	비상임이사	김OO	동서대학교 총괄부총장		2022.12.29.~2024.12.28		
	비상임이사	부OO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2022.12.29.~2024.12.28		
	비상임이사	장OO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2023.08.07.~2026.08.06		
	비상임이사	김O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		2023.08.07.~2026.08.06		
주요기능	◦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1. 특구육성사업 2. 제도지원 3. 특구개발 관리 4. 특구 인프라 지원						
자본금 (단위: 백만원)		41,263 ('22.12월 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33,506(출연) ('22.12.31.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73,763
	예산액	180,129	190,704	189,017		부채	11,714
	지자체 지원액 (출연금)	800	900	900		자본 (자산-부채)	62,049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영업이익	
	227,283			227,550		△267	

1-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		출연	45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강소특구 공공연구기관·대학 등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사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사업화 성과 창출
-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 촉진 및 유관 기관 연계 투자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출연개요

- 사업명 : 충북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기간 : 2024. 3. 10. ~ 2025. 3. 9.
- 출연액 : 450백만원(도비)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백만원)

구분 (기준보조율)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20,500	7,000	4,800	2,900	2,900	2,900	'22.부터 지방비 매칭 상향 (국고 대비 20% → 국고 대비 40% 이상)
국비	16,000	6,000	4,000	2,000	2,000	2,000	
도비	2,250	500	400	450	450	450	
시군비	2,250	500	400	450	450	450	

- 사업내용 :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R&D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지역 특화기업 성장지원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

□ 기대효과

- 공공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 특구 내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과 사업화 성과 창출
- R&D-사업화-재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14개 특구가 사업계획과 사업별 예산 및 핵심성과 지표가 유사하나, 출연 의무 불이행시 육성사업 운영불가로 성과지표 미달성, 기업지원 중단과 그에 따른 특구별 평가 및 강소특구 2단계 사업에 불이익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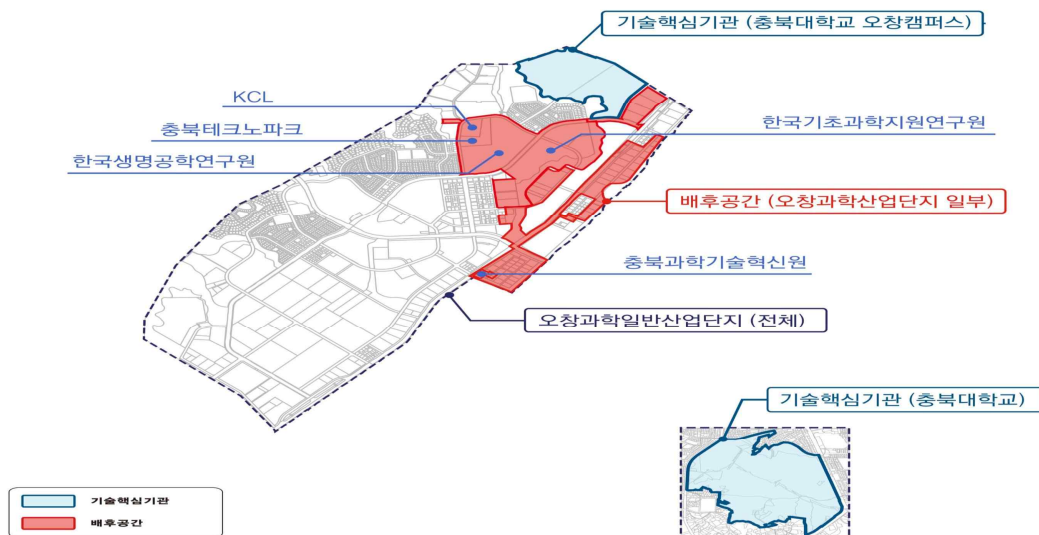
참고 1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 일반현황

- (특화분야) 스마트 IT 부품 및 시스템
- (위 치) 충북대 본교 및 오창캠퍼스, 오창과학산단 일부
- (사업기간) 2020 ~ 2024년(5년) * 특구 선정 2019.8.
- (사업예산) 205억(국160, 지45) * 24년 29억(국20, 도4.5, 청주시4.5)
- (면 적) 2.85km²(기술핵심기관 1.41km², 배후공간 1.44km²)
 - ※ 지정 당시 : 2.2km²(19.6.) → 면적 확장 : 2.85km²(23.2. / 배후공간 ↑0.65km²)
- (관리권자/관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産·學·研 인프라) 대학 1개, 정부출연연 2개, 혁신기관 5개, 기업 254개
 - 기술핵심기관(대학): 충북대
 - 정부출연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기타혁신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 기업수 : 총254개 기업 / 특화기업 128개
-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 (지정혜택)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
 - R&BD지원,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 등(특구 당 연 20억원 정도 국비)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3년간 100%, 2년간 50%), 재산세(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

□ 위치도 및 지형도면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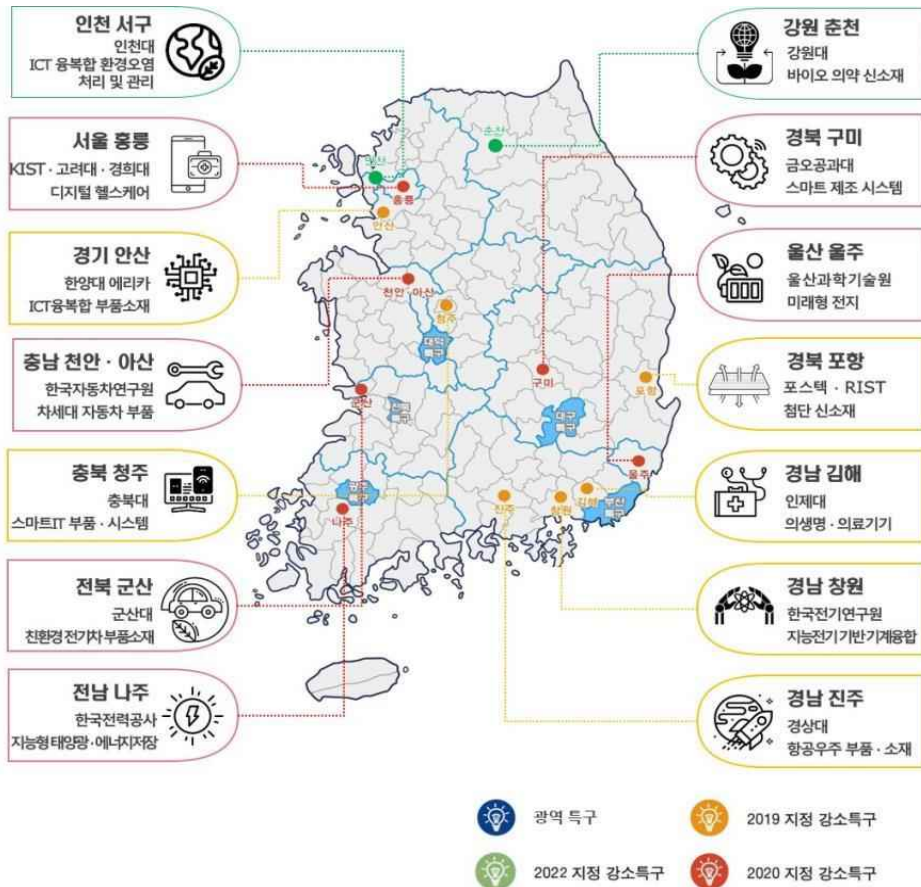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구성(안)

(단위: 백만원)

강소특구 육성사업(안)	수행주체	예산	세부내용
<input type="checkbox"/> 강소특구 육성		2,840	
① 기술발굴 및 연계		480	
①-1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기술혁신기관	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발굴 및 연계 460 - (시장연계 유망기술찾기 및 연구소기업 설립) 200 X 1개(간접) - (강소특구간 연계협력 기술이전 지원) 200 X 1개(직접) - (연구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 60 X 1개(직간접)
①-2 연구소기업 기술 가치평가	특구재단	20	· 기술가치평가 20
② 기술이전사업화		800	
②-1 기술이전 R&BD	특구재단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R&BD 700 * 연구소기업형 (200×2개 내외), 기술이전형(200×2개 내외)
②-2 협력 Value-up R&BD	특구재단	100	· 협력 Value-up R&BD 100
③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500	
③-1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기술혁신기관	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폴리스캠퍼스 470 * 창업 아이템 검증, 공백기술 매칭, 아이템 사업화 실증 지원, Track형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데모데이 운영
③-2 강소특구 연계협력 지원사업	특구재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특구 연계협력 지원 30 * 2개 이상 특구간 연계프로그램사업화 기획 등 지원 등
④ 강소특구 특화 성장 지원		1,060	
④-1 혁신네트워크 육성	기술혁신기관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네트워크 육성 220 - 지역 혁신 네트워크 운영비 및 전문가 활용비 220
④-2 지역 특성화 육성	기술혁신기관	840 (지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기업 성장지원 840 - 미래기술융합제품혁신지원 540백만원 -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지원(INNO-BIG) 사업 150백만원 - 온라인 플랫폼 기업지원(IUM) 사업 150백만원
<input type="checkbox"/> 특구재단 간접비		60 (지방비)	
<input type="checkbox"/> 간접비 포함 예산 합계		2,900	합계

참고 3

전국 강소특구 지정현황



지정시기	지역(기술핵심기관)	면적	입주현황(개)	특화분야
'19년 지정 ('19.8.)	① 안산(한양대 에리카)	1.73km ²	기업(312), 공공연(3), 대학(1)	ICT 융복합 부품소재
	② 김해(인제대)	1.13km ²	기업(83), 공공연(1), 대학(1)	의생명·의료기기
	③ 진주(경상대)	2.17km ²	기업(247), 공공연(2), 대학(1)	항공우주 부품·소재
	④ 창원(한국전기연구원)	0.65km ²	기업(20), 공공연(1)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⑤ 포항(포스텍, RIST)	2.72km ²	기업(193), 공공연(8), 대학(1)	첨단 신소재
	⑥ 청주(충북대)	2.85km ²	기업(254), 공공연(7), 대학(1)	스마트IT 부품·시스템
'20년 지정 ('20.8.)	⑦ 구미(금오공대)	2.57km ²	기업(303), 공공연(1), 대학(1)	스마트 제조 시스템
	⑧ 서울(홍릉) (KIST, 고려대, 경희대)	1.38km ²	기업(276), 공공연(1), 대학(2)	디지털 헬스케어
	⑨ 울산(울주)(UNIST)	3.01km ²	기업(142), 대학(1)	미래형 전지
	⑩ 나주(한국전력공사)	1.69km ²	기업(195), 공공연(2)	지능형 태양광·에너지 저장
	⑪ 군산(군산대)	2.70km ²	기업(127), 공공연(4), 대학(1)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⑫ 천안·아산 (한국자동차연구원)	1.32km ²	기업(102), 공공연(1)	차세대 자동차 부품
'22년 지정 ('22.5.)	⑬ 춘천(강원대)	1.86km ²	기업(58), 공공연(4), 대학(1)	바이오 의약 신소재
	⑭ 인천(서구)(인천대)	2.22km ²	기업(124), 공공연(4), 대학(1)	ICT 융복합 환경오염 관리

참고 4

강소특구 사업 지방비(출연금) 매칭비율

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소특구 사업 지방비(출연금) 매칭비율 상향 통보

1. 관련

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584('21.8.24.,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통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9조(협약)

2. 강소특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기획재정부 '21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8.24)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총사업비 대비 30%(국고 대비 40%) 이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소특구 육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

(단위 : 억원)

연도	특구 구분	국고	지방비	사업비 합계	
2022	'19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516
	'20년 지정	240 (특구당 40)	102 (특구당 17)	342 (특구당 57)	
2023	'19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348
	'20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2024	'19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348
	'20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2025	'19년 지정	-	-	-	174
	'20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 '19년 지정 특구 6개, '20년 지정 특구 6개 기준
끝.

1-④ 관계법령 발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사업)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2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유희남	김영옥	윤자원	8414

기관명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김상규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 기관규모: 1단 2본부 ○ 주된사업: 지역 과학기술 진흥,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기획·육성 								
출자·출연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1,004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R&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24.1.~12.	604	604	604	-	604	-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24.1.~12.	200	200	640	-	200	440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24.1.~12.	200	200	500	-	200	300	-	
* 시군비는 재단으로 직접 지원									
출자·출연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기획·육성 기능 수행 ○ 남·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산업 지능화·고도화 전략 마련 								
근거법령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지도감독부서인견(중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국비 사업 다수 확보 등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 석·박사급 R&D 인력 인건비 및 혁신지원센터 운영비 등 지원 필요 - 특히,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AI 제조기반 인프라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 과학기술 확대 보급, 남·북부권 혁신성장 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 관계법령 발체 								

2-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본 기관은 '03년 7월 설립 후, 지역 주도 과학기술 진흥 정책 수립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VR)·증강(AR) 현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기획·육성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 '20년 6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기존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고 조직개편을 감행하는 등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기관 혁신을 위해 노력
 - 또한, '22년 신규사업 확보실적(102,475백만원)으로 전년도 실적(59,118백만원) 대비 73.3% 증가, 석·박사급 R&D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사업 확보 여건 조성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 도모
 - 특히,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남·북부권에 5대 혁신기관* 및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혁신지원센터」 운영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AI 제조기반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확대 보급 등 적극 수행으로 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비 출연 필요
- *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출연금 검토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결산액	2023 예산액(최종) (C)	2024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요구액 (A)	실과검토액 (B)	증감 (B-A)	
석박사급 R&D인력 인건비	495	515	604	604	-	89
부가세 환급금	100	89	-	-	-	△89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200	200	200	200	-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	200	200	200	-	-

2-2 출연기관 현황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근거	법률 ① 민법 제32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③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043-210-0800		
					홈페이지: www.cbist.or.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 7.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등기 ·'04. 1. :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통합 ·'07.12. :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준공 ·'18.10. :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개소 ·'20. 6.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명칭 변경 ·'22. 3.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23. 1. : 선도연구개발지원단 선정 ·'23. 3.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23. 6. : 산업디지털전환 지역거점기관 지정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23.9.30. 기준)	계		정규직		정원 외		
	99명		69명		30명		
입원 (23.9.30.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김○○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당연직		
	상임이사	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2022.1.1.~2023.12.31.(2년)		
	비상임이사	김○○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이○○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2021.10.8.~2023.10.7.(2년)		
	비상임이사	연○○	충북일보 대표이사		2021.10.8.~2023.10.7.(2년)		
	비상임이사	이○○	(주)유진테크놀로지 대표		2021.10.8.~2023.10.7.(2년)		
	비상임이사	정○○	(주)브이알북 대표		2021.10.8.~2023.10.7.(2년)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VR)·증강(AR) 현실, 블록체인 산업육성 및 활성화 -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 조사, 성과분석, 평가 등 정책 연구 - 첨단산업 기술 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뉴 콘텐츠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 (단위: 백만원)	50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5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2.12.31. 기준	자산	35,041
	예산액	36,534	71,428	70,461		부채	20,334
	지자체 지원액 (출연금)	565 (도)	795 (도)	1,004 (도)		자본 (자산-부채)	14,707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2.12.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1,845				49,669		2,176

2-3-1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석·박사급 R&D 인력 인건비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출연	604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석·박사급 우수 R&D 인력 지원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으로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기획·육성을 위한 도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수행

□ 출연개요

- 사업명 : R&D 인력 인건비
- 기간 : 2024. 1. ~ 12.
- 출연액 : 604백만원
- 주요내용 :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기획을 위한 R&D 인력 지원

□ 산출기초

- 석·박사급 R&D 인력(8명) 인건비 지원(604백만원)
* R&D 신규인력 증원(7명→8명) 및 인건비 상승율(3%) 반영 편성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출자	-	-	-	-	-	-
출연금	2,762	394	565	595	604	604
인건비	2,159	80	465	495	515	604
부가세환급금	389	100	100	100	89	-
기관운영비	214	214	-	-	-	-

□ 기대효과

- 지역 R&D 거점기관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지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력 확보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기원의 안정적인 재단운영 어려움 발생으로 R&D전담기관의 역할 수행에 한계, 과학기술과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기 대응 곤란

②-③-2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출연	20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산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지원하는 도내 혁신기관* 청주권에 집중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도 공공기관 분산 배치 실현 등을 위해 북부권에 산업혁신 및 신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관리체계 운영 필요

□ 출연개요

- 사업명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 기간 : 2024. 1. ~ 12.
- 출연액 : 200백만원
- 주요내용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지원

□ 산출기초

-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도비 부담금 일부 지원
* 소요예산 640백만원(도 200, 충주 390, 단양 50)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출자	-	-	-	-	-	-
출연금	600	-	-	200	200	200

□ 기대효과

-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북부권 기업지원 강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기원의 재정 여건상 북부권 신산업 발굴·육성 등 역할 수행 및 공약 이행에 어려움 발생, 지역산업 균형발전 대응 곤란

②-③-3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출연	20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도내 혁신기관의 청주권 집중으로 남부권 산업체와의 연계성 및 접근성이 낮아 산업생태계 변화에 능동적 대응 곤란
- 남부권 산업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신사업 발굴 및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성장·발전 견인

* 공약사항 : 도 공공기관 분산배치(94-5.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

□ 출연개요

- 사업명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
- 기간 : 2024. 1. ~ 12.
- 출연액 : 200백만원
- 주요내용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지원

□ 산출기초

-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도비 부담금 일부 지원

* 소요예산 500백만원(도 200, 보은·옥천·영동 각 100)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출자	-	-	-	-	-	-
출연금	400	-	-	-	200	200

□ 기대효과

-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남부권 기업지원 강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기원의 재정 여건상 남부권 신산업 발굴·육성 등 역할 수행 및 공약 이행에 어려움 발생, 지역산업 균형발전 대응 곤란

2-④ 관계법령 발취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12. 30.)

제6조(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① 충청북도지사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3. 7. 4.)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 12. 10.)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